# 무배당수호천사 치아치료는동양생명보험(갱신형)

# 사 업 방 법 서

# 무배당수호천사치아치료는동양생명보험(갱신형)

# 1. 보험종목의 명칭

구 분	보험종목		
주계약	무배당수호천사치아치료는동양생명보험(갱신형)		
종속특약	ᄆᄤᄄᆸᅒᅺᆿᇀᅅᄱᆑᅕ	1 형(기본형)	
	무배당보철치료특약(갱신형)	2 형(보장강화형)	
	무배당보존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1 형(연간 1 개한)	
		2 형(연간 3 개한)	
		3 형(보장강화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주계약 및 종속특약(무배당보존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초계약	10 년만기(갱신형)		5 세~70 세
	1 년만기(갱신형)	전기납	76 세~79 세
갱신계약	5 년만기(갱신형)	선기급	71 세~75 세
	10 년만기(갱신형)		15 세~70 세

# - 무배당보철치료특약(갱신형)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초계약	10 년만기(갱신형)		6 세~70 세
	1 년만기(갱신형)	전기납	76 세~79 세
갱신계약	5 년만기(갱신형)	선기급	71 세~75 세
	10 년만기(갱신형)		16 세~70 세

나.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가. 무배당보존치료특약(갱신형)은 무배당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의 각 세부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함께 부가하여야 한다.
- 나. 무배당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은 무배당보존치료특약(갱신형)을 함께 부가하여야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가. 가족 추가가입 할인

회사가 정한 치아보장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본인의 형제자매에 한함)이 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이 보험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한다. 단,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피보험자수(본인포함)	보험료 할인율	
2 명	2%	
3 명이상	3%	

- 나. '가'의 할인은 이 보험을 포함하여 가족이 회사가 정한 치아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두 건 이상의 계약이 유지중인 동안 해당 할인율을 적용한다.
- 다. 최초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가족이 새로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회사에 「가족 추가가입 할인」을 신청 또는 변경하고, 신청 또는 변경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부터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영수한다.
- 라. '가'에서 '다'의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최초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나. 회사가 '가'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 13. 기타

#### 가. 갱신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 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계약 약관 제 3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 (2) '(1)'에 따라 자동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의 15 일 전까지 이 계약의 주계약 보험종목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되는 계약 이전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으로 갱신한다.
- (3) '(1)'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 및 해당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는다.
  - -.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
  - -.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
- (4)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한다.
- (5)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
- (6)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갱신 전 30 일 전까 지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1)'에 따라 새로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 체결 시 안내한다.
- (8)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나. 보험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을 10년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해당나이가 71세 이상 75세 이하의 경우 5년 만기, 76세 이상 79세 이하의 경우 1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한다.

- 다. 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는 부가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주계약 및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라. 보험안내자료 등의 필수 기재사항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 안내장 등의 안내자료를 통해 제공 하고, 설명해야 한다.
  - (1) 보장개시일 및 유치·영구치 치수치료, 유치·영구치 보존치료, 유치·영구치 크라 운치료, 영구치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영구치 발치,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구내방사선촬영, 파노라마촬영 관련 감액기간

	구 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유치·영구치 치수치료, 영구치 발치,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구내방사선촬영, 파노라마촬영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	해당 없음
	영구치 보철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 년
	유치·영구치 보존치료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는 해당 없음)

구 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유치·영구치 크라운치료		
갱신계약	갱신일	해당 없음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임플란트 보철치료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해당 없음

- ※ 감액기간에 치료한 경우,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치료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 ※ 재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2) 다음의 경우 해당 치수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2. 치수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치아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일 경우
  - 3.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4.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 5.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3) 다음의 경우 해당 보존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2. 보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치아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일 경우
  - 3.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4.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 5.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4) 다음의 경우 해당 크라운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2. 크라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치아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일 경우
  - 3.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4.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 5.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5) 다음의 경우 해당 보철치료비 및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치한 경우
  - 2.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치아교 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 3. 영구치 발치일이 확실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4.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 또는 임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 5.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의 보철물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단,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제외)
  - 6.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8. 영구치 발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철치료(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포함)
- (6) 이미 치수치료 또는 보존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 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 또는 보존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한다.
- (7) 동일한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보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 (8) 동일한 잇몸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치료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한다.
- (9)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는 동일 부위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

립 임플란트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마. 상품명칭 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 바.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 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2) 특약

-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 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한다.